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수입신고 등)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다.
 - 1.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(이하 "관계서류"라 하다)

2. 상업송장

-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 청장"이라 한다)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・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4조의3(수입검사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,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
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,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,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한다.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2서식]

수입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 기간	3일		
목재수입 유통업자	사업자등록번호				대표자			
	상호							
	주소							
		전화반	년호:			(FAX:)
수입신고 대행업자 (해당되는 경우만	사업자등록번호				대표자			
	상호							
	주소							
적습니다)		전화반	호:			(FAX:)
	제품명	재의 경약	우만 적습	급니다)	모델·규격			
	총 중량	순 중링	ţ.			총 포장개수		
	수량	단가				금액		
	성분	품목번 (HSK번						
신고내용	원산국	·		수출국				
	생산회사		주소	ı				
	수출회사		주소					
	선박명		국내도	착항		입항일	0.1	
	보관창고	화물관리번호			년 선하증권번호	월	일_	
	(전화번호				(B/L번호)		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천부서류 1.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2. 상업송장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3서식]

수입신고확인증											
접수번호				겉	ゴ수 일		년	월	일		
발급번호					Ę	발급일		년	월	일	
수입 신고	사업자 등록번호				С	배표자					
인	상호					주소					
제품명			수종 (목재의 경우만 적습니다)								
총 수량				총 중량							
화물관리번호				선하증권번호 (B/L번호)							
원산국				수출국		<u> </u>					
생산회사					수출회사						
품목번호 (HSK번호)											
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											
				제 품	내	용					
연번 제품명			성분 화물관리		번호 수량		량	중량			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			
								년	월	일	
	산림청장 직인										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3호서식]

상 호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사업 실적 보고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생산(수입)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(단위: m³, 톤)

						··· , _ /
목재생산업의 종류	원목의 수종 및 목재제품의 종류 (원산지/제조국)	생신	난량(수입량)		재고량	
		전월 실적	당월 실적(A)	전월 실적	당월 실적(B)	(A-B)

끝.

- * 작성방법
- 1. 원목생산업의 경우: 원목의 수종별 생산량·판매량·재고량을 적습니다.
- 2. 제재업의 경우: 목재제품의 종류별 생산량·판매량·재고량을 적습니다.
- 3.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: 수입한 원목의 수종별 및 목재제품의 종류별 원산지(제조국)·수입량·판매량·재고량을 적습니다.

발 신 업 체 명 의

직인

시행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 /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